

#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1
----------	-----

제출년월일 : 2023.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금연구역 시설 지도점검을 수행하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현행화하여 경비부담 증가로 인한 활동 제한을 방지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함.

## 2. 주요내용

- 가. 평창군 금연지도원 1일(4시간 이상 근무) 활동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 나. 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23년 2회 추경에 2,880,000원 반영 예정
-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3. 03. 08. ~ 23. 03.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4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u>4만원</u>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6조(활동수당 지급) ① ----- ----- ----- ----- <u>5만원</u>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 관계법령 발췌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금연지도원 지도점검에 따른 활동수당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 허헌
연락처	(033) 330 - 4880